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1. 청소년증 개요

□ 개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2. 청소년증 홍보 포스터



여성가족부



Help Call 1388
청소년전화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만 9세~18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
- 2017년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무료)

구분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사용 지역	경북(안동), 경남 11개 지역 이외 전국에서 사용 가능	서울, 경기, 대구, 인천, 광주, 경북 16개 지역, 전남 3개 지역, 제주, 울릉도에서 사용 가능	대전, 경남 9개 지역 이외 전국에서 사용 가능
사용처	교통	버스, 도시철도, 택시, 전국철도역사, 고속도로, 유료도로	지하철, 시내버스, 기차, 택시, 공항버스, 시외버스(경기·충남), 고속버스(*17년 상반기 예정), 고속도로, 유료도로, 유료터널
	가맹점	 카페 스토리웨이, 열차 내 이동식카트, 코레일네트웍스 주차장(9개소)	 (*17년 상반기 예정)
콜센터	1544-7788(내선 5)	080-427-2342	1644-0006

*충전시설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3.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 안내

힘내라 대구정북 힘내라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제시하고 공적마스크 구입하세요!



청소년증은 공적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신분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없이도 청소년증만으로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발급 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신청	청소년 또는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등)
신청 장소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대리인 신청시 증명 서류 필요)

4. 공적마스크 구입 방법

공적 마스크 구입 방법

1 마스크 3대 구매 원칙

◦ 1주 1인 2개 구매제한 •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개(1주간 구매한도) 판매

◦ 출생연도 5부제 판매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주간 미구매자

※ 예: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

◦ 중복구매 방지 •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시스템 가동

2 본인확인 방법

성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미성년자	1. 본인이 직접 여권 또는 청소년증 제시 2.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3.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장애인	대리인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시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함께 제시

3 대리구매 방법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방식	대리구매의 경우 구매대상자(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를 기준으로 적용 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판매처를 직접 방문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요일제 적용 가능
시기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서류	•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기요양인정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내선번호 5)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